



1 EU 관세동맹 대전환 EU 관세청(EUCA: EU Customs Authority) 신설 예정⁷

EU는 프랑스 릴에 관세청을 신설하고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통관을 디지털로 통합하며, 준법기업에게 무개입 통관을 제공함. 반면 소액 면세 혜택을 전면 폐지해 소액 직구 통제는 대폭 강화할 예정임

-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통관 물량 증가, 회원국별 관세행정 체계의 분산 등에 대응하여 관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물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 27개 회원국의 관세행정을 총괄적으로 조율하고 위험관리를 일원화할 전담기구인 EU 관세청(EUCA: EU Customs Authority)을 프랑스 릴(Lille)에 신설할 예정임. EU 관세청을 통해 관세사기 적발 및 법 집행의 일관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EU 관세 데이터 허브(EU Customs Data Hub) 도입:** 회원국별로 분산되어 있던 시스템을 하나의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통합할 예정임. 무역업자는 데이터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되므로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회원국 전체적으로 연간 20억 유로 이상의 운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됨
- **준법 기업(Trusted Traders) 우대:** 신뢰할 수 있는 준법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기존의 신고(Declaration) 기반 통관에서 벗어나, 데이터 공유 기반의 자동 통관(Green Lane)혜택을 부여함. 법규 준수 이력이 우수한 기업에는 파격적인 통관 혜택을 부여하고, 세관의 행정 자원은 고위험 화물 검사에 집중하고자 함
-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시장보호 및 규제강화:** 기존 € 150 이하 물품에 적용되던 관세 면제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임시 조치로서 2026년 7월 1일부터 € 3의 정액 관세가 부과됨
 - EU 취급 수수료(Handling Fee) 신설: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관 당국의 IT 시스템 및 인력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소액 수입품에 대한 취급 수수료를 도입함.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위임입법으로 결정되며, 늦어도 2026년 11월 1일 이전에 시행될 예정임

연도별 실행계획

2027년	○ EU 관세청(EUCA) 설립 및 일부 업무 개시
2028년	○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EU 관세 데이터 허브 최초 가동
2031년	○ 일반 무역 기업들로 데이터 허브 적용 대상 확대 (기업들의 비용 절감 및 간소화 혜택 본격화)
2034년	○ 모든 무역업자의 데이터 허브 이용 전면 의무화, EU 관세의 단일 공식 진입점으로 확립



7 Commission welcomes historic agreement to reform EU Customs Union (IP/26/735) EU 위원회 보도자료 바탕으로 작성(3.26.)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도입) 유럽연합은 2026년 8월 12일부터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을 적용하여 EU 시장 내 포장재에 공통의 환경 기준을 부과할 예정임

- 유럽연합이 ① 불필요한 포장 방지 및 재사용 촉진, ② 국가별 조치에 통일성 부여, ③ 순환경제⁹ 및 기후중립¹⁰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도입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확보, 재활용 원료 사용 확대, 불필요한 포장 제한, 순환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촉진 등을 위한 요건을 도입함
- 포장재란 제품을 보관, 보호, 취급, 배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로 1차 제품 포장, 2차 묶음 포장, 3차 운송·물류 포장이 모두 포함됨
 - 제품의 필수적인 부분인지, 보관·보호·취급·배송·전시 목적이 있는지, 제품과 함께 사용·소비·폐기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접착필름

제조공정상 후속 반제품으로 변환·조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공정 재료인 경우 포장재로 보지 않으나, 제품의 보호 등 포장 기능을 수행한다면 포장재로 볼 수 있음



화분·모종 트레이

화훼업자가 생산 공정에서 사용하는 경우 포장재로 보지 않으나, 식물과 함께 판매·운송되도록 의도된 경우 포장재로 볼 수 있음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가이드라인 초안」, 2026.3.30.

8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EU) 202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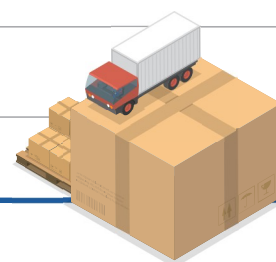
9 제품을 재사용, 수리, 재제조, 재활용하여 제품, 자재, 자원의 가치를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10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후 완화),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기후 적응) 등으로 2050년까지 기후 변화의 불가피한 영향에 완전히 적응하는 전략

- PPWD¹¹는 지침 형식(Directive)으로 회원국별 자율 목표설정에 그쳐 회원국별 이행에 차이가 있었으나, PPWR은 규정 형식(Regulation)으로 회원국내 별도의 국내법 제정 절차 없이 직접 적용되며 지속가능성 · 라벨링 등 포장 요건을 세분화하여 EU 전역에 통일된 정량적 기준을 명시함

요건	법조항	내용
지속가능성	제5조 포장에 포함된 물질에 대한 요구사항	-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합계 100mg/kg 이하 - 식품접촉포장의 과불화화합물(PFAS) 농도 제한 (개별 PFAS 25ppb, PFAS 합계 250ppb, 중합체 PFAS 포함 전체 PFAS 50ppm 이하)
	제6조 재활용 가능한 포장	- 2030년부터 재활용성능 70%이상(C등급) - 2038년부터 재활용성능 80%이상(B등급)
	제7조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원료 최소 비율 (2030.1.1.)	- PET 접촉 민감성 포장 30%(2040년부터 50%) - PET 외 접촉 민감성 포장 10%(2040년부터 25%) -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30%(2040년부터 65%) - 기타 플라스틱 포장 35%(2040년부터 65%)
	제8조 플라스틱 포장의 바이오 기반 원료	- 기술 개발 및 환경친화성 현황 검토(2028.2.12.)
	제9조 퇴비화 가능한 포장	- 투과성 티백, 과일에 부착된 스티커 등에 적용(2028.2.12.)
	제10조 포장 최소화	- 최소한의 중량과 부피로 제한(2030.1.1.)
	제11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	-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간주
라벨링, 표식 및 정보 ¹²	제12조 포장의 표식	- 재료 구성 등 그림문자 기반 표식
	제13조 포장 폐기물 용기의 표식	- 포장 폐기물에 분리수거 표식
	제14조 환경 관련 표식	- PPWR 최소 요건 충족 표식

출처: 유럽의회·이사회,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2024.12.19.**



- 제조업체는 포장이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작성 · 보관해야 하며, 당국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¹³
- 환경 또는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포장에 대해 회원국 시장감시당국은 시정조치, 리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국은 2027년 2월 12일까지 행정 벌금 등 처벌 규칙을 마련할 예정임

11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94/62/EC. PPWD를 대체하여 PPWR이 도입됨

12 표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시행법 제정 후 2028년 8월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시행법 제정 시기에 따라 적용 시점이 지연될 수 있음

13 부속서 VII. 기술문서는 포장 설명 및 용도, 제조 도면, 구성 재료, 시험보고서 등이 포함됨

- 제24조에 따라 2030년 1월 1일 또는 관련 시행법 발효 후 3년이 지난 날 중 늦은 시점부터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이 50% 이하로 제한되어, 식품·화장품·생활소비재·전자상거래 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산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PPWR은 특정 국가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에 일괄 적용되므로, 수출기업은 포장재의 유해물질 함량, 재활용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지속가능성 요건과 라벨링 요건을 충족한다면 EU 시장 진입 및 거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음

3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철강 신규 수입 규제안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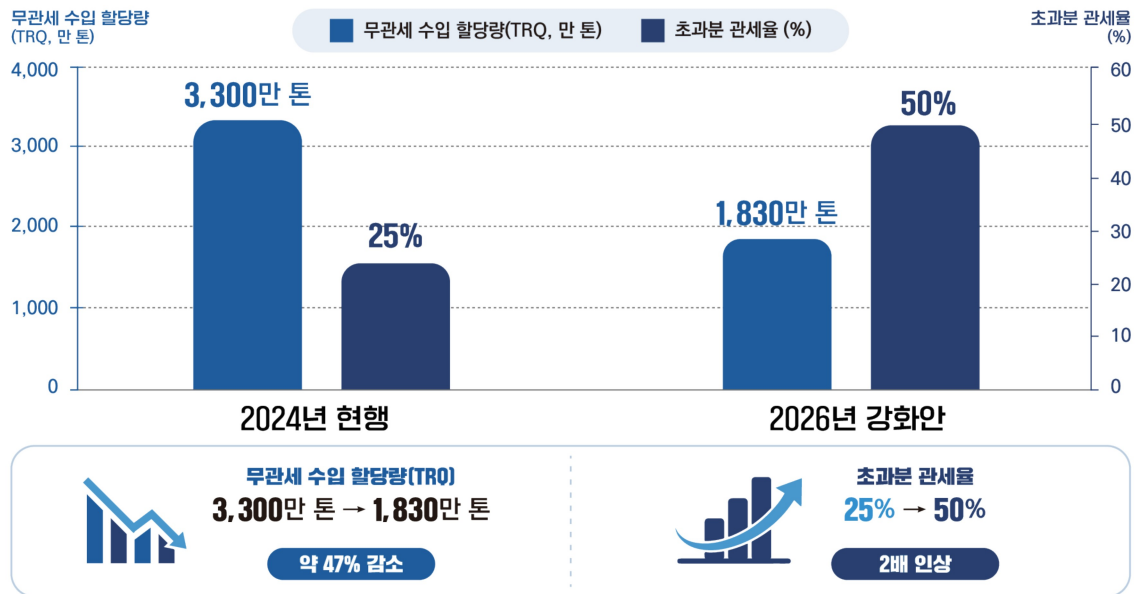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대체안 합의) 유럽연합은 2026년 6월 30일 만료 예정인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역외산 철강 수입 규제안에 잠정 합의하여 채택을 앞두고 있음

- 미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 도입과 연계된 추가 수입 증가 위험에서 EU 철강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7월 도입된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6년 6월 30일에 만료됨¹⁴
- 집행위원회가 2025년 10월 7일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을 제안하였고, 이는 일부 수정되어 2026년 4월 13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잠정 합의하고 5월 19일 유럽의회가 승인하였으므로, 이후 이사의 승인을 받으면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¹⁵
 - **(무관세 수입 할당량 제한)** 2024년에는 무관세 수입 쿼터가 약 3300만 톤이었으나, 이를 약 1830만 톤으로 변경하여 **전체 무관세 수입 쿼터를 약 47% 감소**시킴
 - **(할당량 초과분 관세율 인상)** 쿼터 초과분의 관세율 수준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함



14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는 8년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음

15 유럽연합 이사회, 「EU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신규 철강 수입규제안 잠정합의」, 2026.4.13.
유럽 의회, 「EU 철강 시장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승인」, 2026.5.19.



구분	2024년 현행	2026년 강화안	변화율
무관세 수입 할당량	3,300만 톤	1,830만 톤	↓ 약 47% 축소
초과분 관세율	25%	50%	↑ 2배 인상

- **(분기별 이월 허용)** 적용 첫 해 동안은 모든 제품 카테고리에 대해 미사용 쿼터의 분기별 이월을 허용하나, 2년 차부터는 제품 카테고리, 기준에 제한을 두어 허용 여부를 결정함
- **(조강국 신고의무 도입)** 우회 수입 방지와 공급망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입자가 철강의 조강국 (melt and pour)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이 요구됨¹⁶

[사례] 중국산 슬래브(HS 7207)를 한국에서 열간압연하여 열연코일(HS 7208)로 가공한 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한-EU FTA 원산지 기준 제7208호 제품은 제7206호 또는 제7207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되어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므로 열연코일은 한-EU FTA 상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

주의 사항 신규 철강 수입 규제상 조강국은 슬래브가 처음 용해·주조된 국가인 중국으로 식별될 수 있음. 따라서 FTA 원산지(한국)와 철강 수입 규제상 조강국(중국) 정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함.

- EU당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조강국 신고 의무를 시행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철강 무역규제조치 및 관리 체계의 기준으로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지속 검토할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산 철강 수입 제한)** 러시아산 철강 수입을 매년 감소하는 쿼터로 제한하고, 2028년 9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퇴출함

- 2025년 기준으로 EU는 한국의 철강 제품 수출 2위 시장으로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쿼터가 감축되어 불리하지만 한국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국가별 쿼터 협상 대상에 해당하므로 불리함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음

4

EU 역내 생산 우대

산업가속화법안(IAA) 추진

(산업가속화법안 초안 제출) 집행위원회는 EU산 제품 수요 촉진을 위해 2026년 3월 4일 산업가속화법안(IAA¹⁷)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임

- 에너지 집약적 산업¹⁸, 넷제로(탄소중립) 기술¹⁹ 및 자동차 산업²⁰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EU산 제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키고자 집행위원회에서 2026년 3월 4일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 초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임
-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국내 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4년 14.3%에서 2035년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산업가속화법안을 제안하며, 구체적 목표로 ① 단일시장을 활용한 저탄소 산업제품 및 넷제로 기술 수요 확대, ② 전략적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질과 편익 제고, ③ 제조 프로젝트 허가 절차의 가속화 및 클러스터 개발 촉진을 통한 대규모 제조 촉진을 제시함
- **(공공조달 및 공적 지원에서의 역내산 및 저탄소 요건 부과):**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넷제로 기술이나 탄소집약적 산업제품을 구매(공공조달)하거나 이에 대해 보조금 등의 공적 지원을 제공할 때, 원산지 요건(EU산 비중)과 저탄소 요건을 동시에 필수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제6조)
- **(EU산의 정의)** 특히 저탄소 산업제품 및 넷제로 기술 수요 확대와 관련하여 EU산의 비중 확대가 요구되며, 이때 EU산의 정의는 EU관세법 제60조 제2항의 비특혜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에 따름



17 Industrial Accelerator Act Proposal, COM(2026) 100 final.

18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종이·제지, 석유정제품, 화학, 고무·플라스틱, 기타 비금속광물, 기초금속 제조업 등

19 태양광, 풍력, 배터리, 수소, 전기분해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전략 기술

20 자동차 부품, 자동차,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등

- 따라서 둘 이상의 국가가 생산에 관여한 물품은 품목별 비특혜 원산지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품목별 기준이 없다면 경제적으로 정당한 마지막 실질적 가공 또는 작업이 EU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EU산인지 여부가 판단됨²¹

[사례1] 중국산 슬래브(HS 7207)를 독일에서 열간압연하여 열연코일(HS 7208)로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판단 연합관세법 위임규정 부속서 22-01의 품목별 비특혜 원산지 기준인 HS 4단위 세번변경(CTH) 기준을 충족하므로 해당 열연코일은 EU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

[사례2] 중국산 배터리 셀(HS 8507)을 폴란드에서 조립하여 전기차용 배터리팩(HS 8507) 제조

원산지 판단 연합관세법 위임규정 부속서 22-01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없으므로, 연합관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마지막 실질적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봄

선행 판례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전통적 원산지 판례(*Yoshida, 114/78; Brother International, C-26/88*)에 따르면, 조립 공정이 기술적 관점과 상품의 성격상 구성 부품의 용도를 확정하고 최종 상품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는 결정적 생산 단계라면, 원산지를 부여하는 실질적 가공으로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유럽사법재판소는 Renesola UK 사건에서 태양광 모듈 조립보다 태양전지 제조공정이 제품의 핵심 기능을 부여한다고 보아 태양전지 제조국을 원산지로 판단함²²

주의 사항 전기차용 배터리팩도 EU 내 조립 공정이 최종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EU산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공공 조달 제도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관세동맹협정의 체약상대국의 물품도 협정상 조건을 충족한다면 EU산과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음 (제8조)
- 공적 지원(public intervention) 제도에서는 여기에 더해 정부조달협정(GPA) 당사국의 물품도 협정상 조건을 충족한다면 EU산과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음 (제9조)
- 다만, 집행위원회는 해당 제3국이 EU에 상응하는 대우를 제공하지 않거나, EU 내 공급 안정 확보 또는 협정상 예외 사유로 정당화되는 경우 공공 조달 및 공적 지원에서의 동등 대우를 전부 혹은 일부 배제할 수 있음 (제8조, 제9조)
- 공공 조달 및 공적 지원에서 원산지 요건과 저탄소 요건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저탄소 기준은 향후 위임법을 통해 마련될 예정임 (제10조, 제11조, 제12조)
- 철강·자동차 등 일부 산업은 부속서상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철강은 EU산 요건 없이 저탄소 요건만 요구됨

21 제7조, 연합관세법(UCC) 제60조, 연합관세법 위임규정(UCC-DA) 부속서 22-01 참조

22 유럽사법재판소, Renesola UK, Case C-209/20, 2021.5.20. 선고, ECLI:EU:C:2021:400

부속서 II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대한 저탄소 및 EU 원산지 요건

- 철강의 총량 중 최소 25%는 저탄소 제품일 것
-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총량 중 최소 5%는 저탄소 제품일 것, EU산일 것
- 알루미늄 총량 중 최소 25%는 저탄소 제품일 것, EU산일 것

부속서 III 차량에 대한 EU 원산지 요건

- 유럽연합 내에서 조립되었을 것
-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부품의 총 공장인도가격 중 EU산 구성 비율이 70% 이상일 것
- EU산 배터리 셀 포함 최소 3가지 이상의 주요 특정 배터리 부품을 포함할 것²³
- 발효일로부터 3년 후부터 추가 요건 적용 (배터리셀, 양극활물질, 배터리관리시스템 포함 EU산 특정 배터리 부품이 5개 이상, EU산 전기구동계 부품 및 전자 시스템 총 공장 인도 가격 중 EU산 구성 비율이 각 50% 이상)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업가속화법안(IAA)」, 2026.3.4.

- 외국인 직접투자 승인 과정에서 인력의 최소 50% 이상을 유럽연합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필수 조건을 두는 한편,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 제조 가속화 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지원책도 병행함
- 중국은 EU와 자유무역협정 또는 관세동맹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아니고, 정부조달협정 당사국에도 해당하지 않아 EU산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IAA 초안에 대해 투자 장벽이자 제도적 차별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한국은 EU와의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철강 면세 쿼터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EU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FTA 체결국이므로 EU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 원산지 요건 대응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상호주의 위반 등을 이유로 집행위원회 재량에 따라 원산지 요건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저탄소 요건 충족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23 주요 특정 배터리 부품은 향후 입법·집행 과정에서 추가로 구체화될 예정임

- **(원산지관리 중요성 증가)**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에서의 조강국 기준 도입, 산업가속화법안에서의 원산지 요건 도입에 따라 원산지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짐
 - 조강국 기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EU는 조강국 신고 데이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조강국을 국가별 쿼터 배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산지 리스크 대비가 필요함
 - 산업가속화법안은 아직 초안 단계로, 발효되기까지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내용의 수정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PPWR은 이미 발효되었으나, 세부 기준, 라벨링 방식 등이 단계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후속 지침과 설명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입증자료 관리 필요성 증대)** PPWR 적용에 따라 수출기업은 포장재의 유해물질 함량, 재생원료 사용 비율, 라벨링 적합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할 필요가 있음
 - 관세 데이터 통합과 위험관리 체계 강화로 원산지 및 공급망 데이터 검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생산정보·공급망·원산지 등 입증자료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저탄소 전환 대응)** PPWR에 따라 재활용 가능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축소 등 친환경 포장 전환이 요구되며, 산업가속화법안에서도 저탄소 기준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기업은 장기적으로 저탄소 공정의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수출시장 다변화)** EU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EU측 수입규제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수출시장 다변화 검토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